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19회 임시회 (2018. 4. 13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 
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복지도시위원회

전문위원 신준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**검 토 보 고**

의안 번호	18-31
----------	-------

2018. 4. 13.  
전문위원 신준호

**1. 제안경위**

- 가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환경과)
- 나. 제안일자 : 2018. 4. 2.(월)
- 다. 회부일자 : 2018. 4. 4.(수)

**2. 관련근거**

- 가. 「하수도법」 제41조(분뇨처리 의무), 제45조(분뇨수집·운반업), 제80조(과태료)
- 나.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
- 라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

**3. 제안이유**

공공사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분뇨수집·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명시하고, 「하수도법」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대행기간 내에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인증 조건 규정 신설(안 제9조제5항)
- 나. 수수료 가산금 관련 조항 삭제(안 제12조)
- 다.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삭제(안 제19조)
- 라. 기타 조항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정비

##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나. 입법예고 (2017.12.14.~2018. 1. 3.) : 제출된 의견 없음
- 다. 기타
  - 1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 - 3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#### 6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 의무에 대한 사항을 공공대행사업인 '분노 수집·운반 사무'에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

##### 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
- 가. 안 제9조제3항의 대행업체 재계약 조건인 특별한 결격사유 여부는 「하수도법」의 결격사유인 대행업체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·중복되어 삭제하고,

- 나. 안 제9조제5항은 대항기간내 분노수집·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인증 조건을 명시하였음.
- 다. 안 제12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노의 처리 수수료 가산금 내용은 상위법에 별도 위임규정이 없어 삭제하였고,
- 라. 안 19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절차에 따라 정비하고 별지 제5호 및 제9호 서식은 과태료 부과 징수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출력되는 서식 사용으로 삭제하였음.

○ 검토의견은

그동안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분노수집·운반 대행 사업에 대하여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되어 있어, 대항계약기간내에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도록 하는 재계약 조건을 명시한 사항으로

- 정화조 업무의 사회적 기업화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이익과 사회적경제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향후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역 내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구청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참여를 장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# [관계법령]

##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「하수도법」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

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…(중략)…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45조(분뇨수집·운반업)

① 분뇨를 수집(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)·운반하는 영업(이하 "분뇨수집·운반업"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·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48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##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

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사회적기업 육성계획)

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(이하 "육성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)

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·육성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

#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

제10조(사회적기업 육성계획)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·육성시책을 수립, 시행할 수 있다.

## 「질서위반규제법」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## 「질서위반규제법 시행령」

제4조(과태료 부과 고지서)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

# 【자치구 제계약 및 업체별 취약계층 비율 현황】

(2017. 9.30. 기준)

수거량은 2016년 기준

연번	자치구	업체별 현황								비고
		업체명	허가일	최초 계약일	수거량 (톤)	인력	고령자	수거차량 (대수)	취약계층 비율(%)	
1	종로구	중북환경개발(주)	1998.6.1	1998.6.1	74,734	15	9	7	81	
		환경개발(주)	1979.6.1	1979.6.1	67,254	16	3	6	21	
2	중구	백송기업	1982.08.23	2017.08.12	89,629	17	1	8	6	
		유진건설	1974.08.15	2017.08.12	81,788	19	10	6	62	
3	성동구	세방정화(주)	1974.08.29	1978.09.01	72,751	18	8	7	53	
		무한환경(주)	2001.02.03	2001.03.02	55,273	12	6	6	66	
4	광진구	광진정화(주)	1995.3.1	2001.3.17	75,129	20	10	7	62	
		(합)친절정화	2001.3.3	2001.3.17	69,000	18	9	6	64	
5	동대문구	동명정화	1987.1.	1987.1	72,000	17	11	5	91	
		송인환경	2002.6.10	2002.7	74,000	17	10	5	83	
6	중랑구	금남홍업(주)	1988.08.10	1988.05.10	50,949	17	6	5	46	
		세정정화(주)	2002.03.25	2002.07.01	38,540	13	4	5	44	
		(합)쉬리산업	2006.03.27	2006.07.01	29,918	8	3	4	75	
7	성북구	한일정화	1976.10.04	1976.10.04	93,006	27	20	10	80	
		청수산업	2003.01.27	203.01.27	56,977	18	8	7	53	
8	강북구	금강정화개발	1995.3.1	1995.4.1	81,087	26	12	11	44	
		지수개발	2000.12.29	2001.4.1.	6,663	2	2	3	38	
9	노원구	건양홍업(주)	1988.08.01.	1988.08.01.	46,008.6	11	8	4	88	
		마들환경(주)	2002.03.14.	2002.05.15.	40,645.6	10	5	3	62	
10	은평구	한도정화	1987.3.14	1987.3.14	48,867	17	6	6	46	
		은평산업	2002.3.13	2002.3.19	47,674	21	6	7	35	
		성신환경	2002.3.13	2002.3.19	57,373	18	4	6	28	
11	서대문구	신성정화	1974.08.30.	1974.08.30.	76,273	17	5	8	33	
		연세테크	2002.03.22.	2002.08.01.	34,765	10	5	5	55	
12	마포구	정일환경	1992.01.16	1992.3.18	75,891	13	3	5	27	
		마포환경산업	1996.08.28	1996.9.1	96,795	14	3	6	27	
		홍림	2016.09.28	2016.9.29	11,123	17	8	5	66	
13	양천구	신양IES	1988.06.27	1988.06.27	58,075	11	4	5	44	
		크린정화(주)	2001.6.1	2001.6.1	55,768	12	3	6	30	
		양서환경	2005.9.1	2005.9.1	42,878	9	4	5	80	
14	구로구	경동산업	1982.03.25.	2007.08.31.	122,537	19	5	8	29	
		구일환경	2002.02.28.	2007.08.31.	75,032	17	7	10	53	
15	금천구	고려정화	1979.04.01	1995.2.25	66,213	10	4	6	50	
		신흥환경	2002.05.02	2002.5.10	50,269	10	3	7	42	
16	영등포	서울산업(주)	1974.06.13	2000.06.29	135,412	28	11	10	44	
		덕성개발(주)	1977.01.05	2000.06.29	88,220	19	6	7	35	
17	동작구	삼원환경(주)	1982.2.20.	1982.2.20.	85,068	20	12	8	75	
		고리환경(주)	2002.3.21.	2002.3.21	56,310	16	10	8	76	
18	관악구	(주)네오환경	1996.03.18	1996.03.19	89,079	19	8	12	53	
		세원정화(주)	1984.03.15	1984.03.19	92,761	21	10	13	55	
19	송파구	대보건설	1976.03.16		141,609	28	9	11	34	
		선흥환경	1987.3.1		77,985	17	6	6	42	

※ 인력현황 미작성 : 6개구청(용산구, 서초구, 강남구, 강동구, 강서구, 도봉구)

※ 조사19개구42업체 중 취약계층(고령자)고용비율30%이상: 36개업체

※ 서울시 25개구청의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수 : 55개 업체

## 【사회적기업의 주요 요건】

- ▶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고용비율(30%이상) 의무화 : 고용창출
- ▶ 영업이익의 2/3 이상 사회적 목적 투자
  -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(임금인상, 복리후생비, 성과급 등)
  -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
  - 지역사회 기부등 사회공헌사업
- ▶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(투명 경영)